

FP9 해외지불대행사 외화채권 매입(비소구조건부)

제정 2018-06-05

개정 2019-05-22

개정 2021-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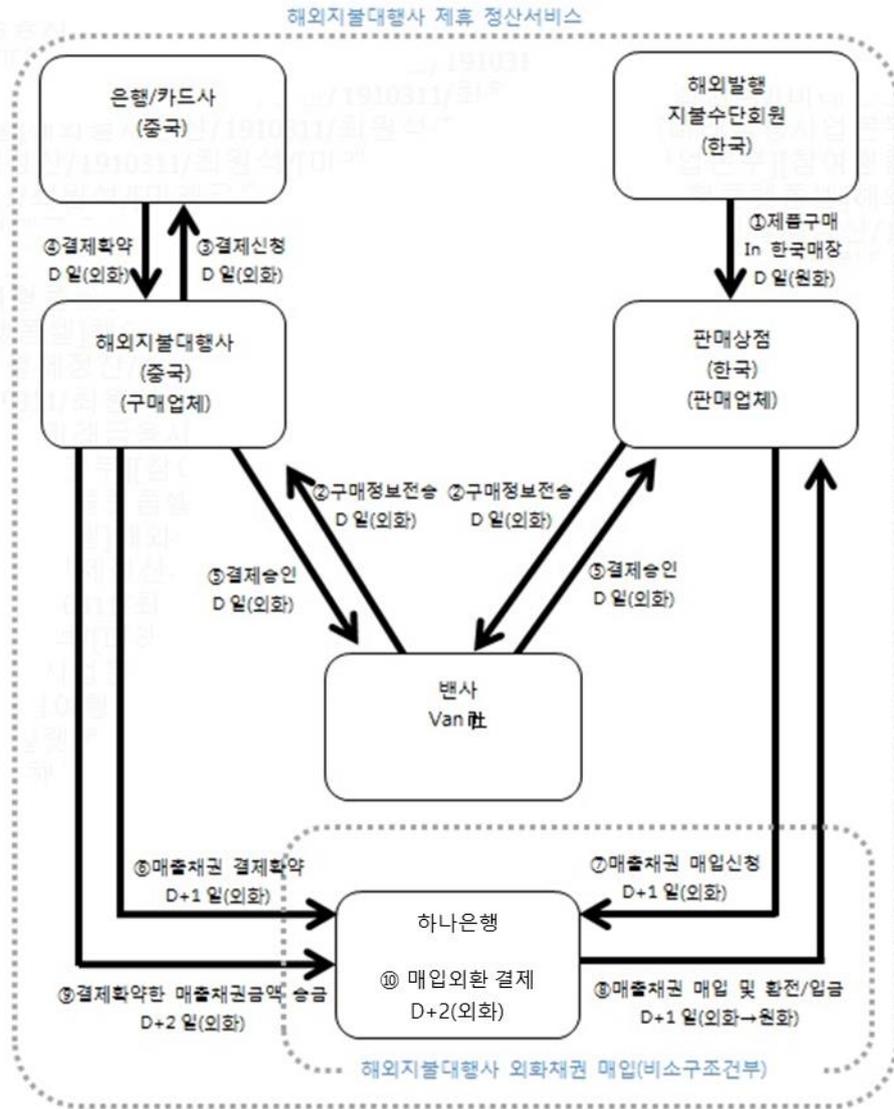
개정 2023-06-15

9.1 개요<개정 2019.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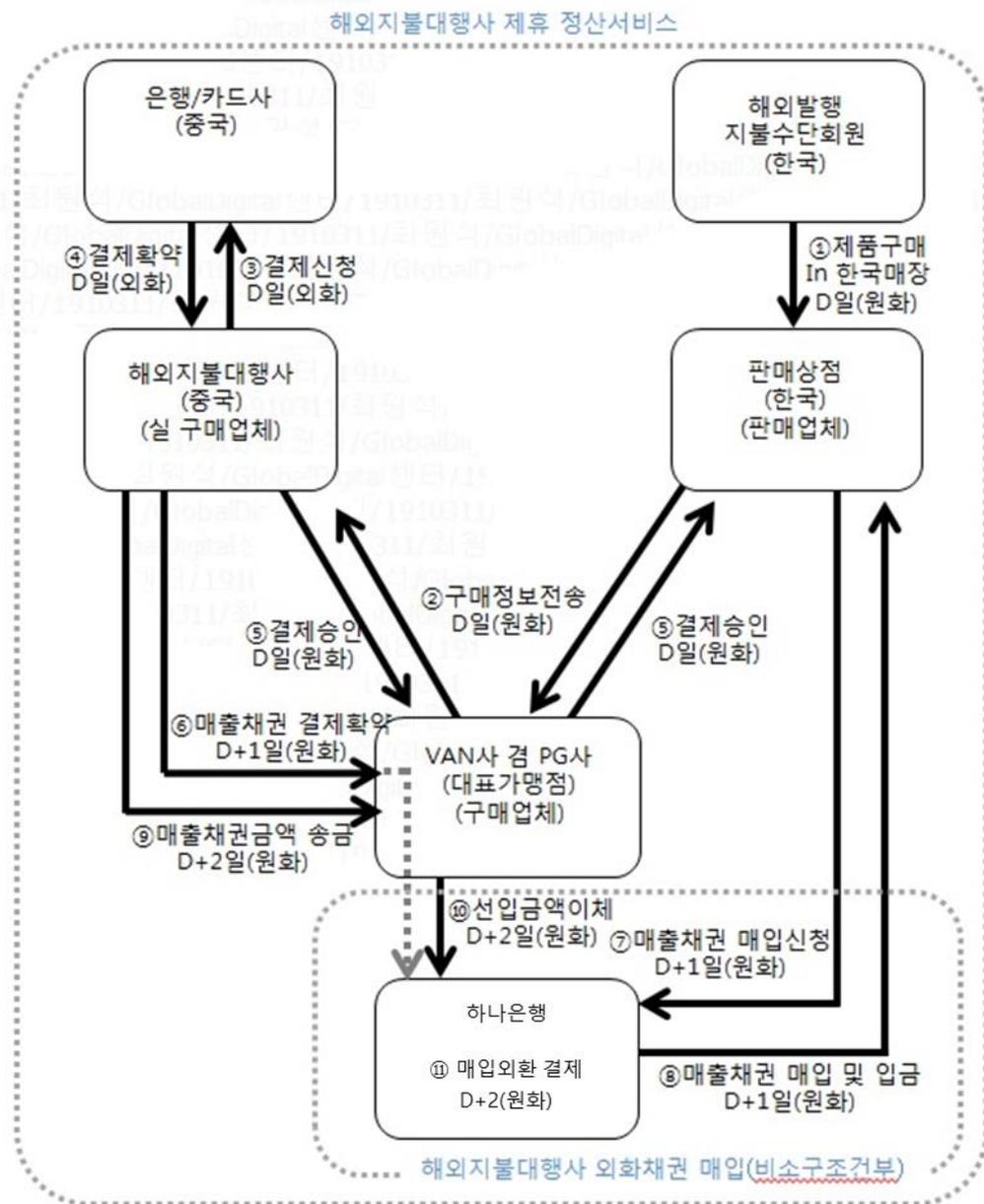
해외지불대행사가 해외발행지불수단으로 결제를 확약한 국내 판매자의 외화매출채권에 대하여 당행이 상환청구권 없이(Without Recourse) 매입하고 외화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원정산의 무자로서 해외지불대행사 또는 해외지불대행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PG사로부터 상환 받는 업무

9.2 거래구조도<개정 2019.5.22, 2023.6.15>

- 1) 해외지불대행사 모델 (해외지불대행사와 당행간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2) PG사 모델 (해외지불대행사와 당행간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9.3 용어의 정의<개정 2019.5.22>

1. '해외지불대행사'란 해외발행지불수단회원이 해외발행지불수단을 통해 결제하는 상거래자금을 지불 대행하는 해외소재의 회사를 의미한다. 해외발행지불수단회원이 해외발행지불수단을 제시했음이 전자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지불대행사는 해외발행지불수단회원의 결제의무를 인수하며, 통상 해외발행지불수단회원의 결제계좌로부터 결제액을 인출하여 보관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된다.
2. '해외발행지불수단'이란 해외지불대행사가 발행한 전자적 지불수단을 의미한다.
3. '해외발행지불수단회원'이란 해외지불대행사에게 자신의 결제계좌를 지정하고 해외지불대행사로부터 해외발행지불수단을 발급받은 자를 의미한다.
4.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정산서비스'란 판매자가 취득한 외화매출채권을 당행이 비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여 판매자 앞 정산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5. '번사'란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정산서비스'를 판매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판매자와 해외지불대

행사간 및 판매자와 당행간 전자적 통신망을 제공하고, 동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서 해당 외화매출채권금액의 일부를 수취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6. 'PG사'란 '해외지불대행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원정산의무자로서, '해외지불대행사 제휴정산서비스'를 판매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외지불대행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당행에 이체(상환)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7. '판매자'란 당행과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정산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한 상품·용역공급업자로서, 해당 해외지불대행사의 본지사나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의미한다.

9.4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정산서비스의 가입<개정 2019.5.22>

1. 해외지불대행사: 해외지불대행사 모델일 경우, 차주로서 외화매출채권 매입일에 대출금으로 외화매출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여신계약에 준하는 별도 계약을 체결
2. PG사: PG사 모델일 경우, 차주로서 외화매출채권 매입일에 대출금으로 외화매출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여신계약을 체결
3. 판매자와 뱅사: 당행의 전 영업점을 통해 해당 해외발행지불수단을 통해 결제 받고 당행으로부터 선정산 받기 위한 약관 계약(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정산계약)을 체결(별도의 여신신청이나 계약 없음)

9.5 매입대상채권<개정 2019.5.22>

매입대상채권은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다.

1. 판매자가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상품-또는 용역으로 취득한 외화매출채권
2. 해외지불대행사가 지불대행의무를 인수한 사실을 '뱅사'가 제공하는 통신망 등을 이용해 직접 혹은 PG사를 경유하여 당행에게 확정 통지한 채권
3. 판매자가 '뱅사'가 제공하는 통신망 등을 이용해 당행 앞 매입을 신청한 채권

9.6 채권매입 절차

1. 판매자가 판매 익영업일에 뱅사의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외화매출채권에 대해 매입을 신청
 2. 판매자가 매입을 신청한 외화매출채권 내역이 해외지불대행사가 당행 앞 지불대행 확정 통지한 외화매출채권 내역과 일치하는 지를 비교 대사
 3. 위 비교 대사에서 일치하는 경우 매입
- ※ 매입신청, 채권대사, 채권매입은 전산으로 자동 처리됨.

9.7 계정과목

기타매입외환-대외(4105961)

9.8 상품코드 및 상품명

상품코드(신설)	상품명	과목명
03-80001-F001-14	매입외환(DP/DA)-해외지불대행사 외화채권 매입(비소구조건부)	매입외환(DP/DA)

9.9 여신한도의 신청 및 운영

1. 구매업체: 기업여신 전결한도에 따른다.

※ 여신한도 신청 및 운영 시 유의사항

여신 신청점은 상환금액이 누적되는 해외지불대행사가 소재한 국가의 최장기간의 연휴를 감안하여 여신한도를 신청하고, 승인 받은 한도는 연휴기간이 아닌 평상시 미사용 한도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2. 판매업체: 별도의 여신한도를 부여하지 않고, 모든 판매자의 실행 잔액을 합산하여 구매업체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

9.10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1. 구매업체: 한도대출, 1년 이내(1년 이내의 단위로 최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한도연장 가능)

2. 판매업체: 구매업체 한도 내 실행된 건 별 실행대출의 연장 불가

9.11 외환수수료<개정 2019.5.22, 2021.1.25, 2023.6.15>

1. 본건 상품에 대한 외환수수료(수출환어음매입 환가료)는 전액 면제 한다.

2. 판매자 앞 정산 시 발생하는 외환매매익 또는 정산수수료로 외환수수료를 대신한다.

3. 외환매매율 및 정산수수료는 취급하는 영업점장이 디지털채널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12 여신심사 및 승인

기업여신 전결기준을 따른다.

9.13 징구서류<개정 2019.5.22>

1. 구매업체:

- 해외지불대행사 모델: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정산서비스'를 위해 당행과 해외지불대행사 간 체결하는 계약서

- PG사 모델: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정산서비스'를 위해 당행과 PG사간 체결하는 여신 계약서

2. 판매업체:

- 법인: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정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신분증 사본,

- 개인: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정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9.14 준용기준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업무내규 및 여신업무내규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